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09 ~ 26 |
|----------|-----------|

| | |
|------|--------------|
| 제출일자 | 2009. 6. 29. |
| 제출자 |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승강기산업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거창승강기산업밸리 마스터 플랜이 수립됨에 따라 승강기산업체의 밸리 이전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도시로의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등을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원활한 추진과 승강기산업체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승강기산업밸리추진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운영방법, 실무위원회, 운영비 및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다. 밸리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한 각종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보조금 지원

-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밸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 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 감면 및 공유재산 지원

- 승강기산업체의 이전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승강기산업체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함

○ 행정적 지원

- 유치한 승강기산업체의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을 전담관리관으로 지정·운영함

○ 보조금 지원신청 등

-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함

라. 그 밖에 보조금 지원대상의 사후관리와 자금지원의 취소 및 환수, 포상, 다른 조례의 준용, 시행규칙 등 조례의 절차적·보충적인 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9호 2009.1.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6조, 제4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6조

나. 예산조치 : 사안발생시 추경예산 확보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9. 5. 19. ~ 2009. 6.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산업체의 효율적인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고 그에 필요한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도시로의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이하 “밸리”라 한다)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등 산업입지 및 기업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승강기산업체”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공장, 본사, 연구소 포함)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출연·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3. “승강기산업”이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치나 그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산·학·연·관 협력”이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대학·연구소·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상호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란 승강기산업체를 뱌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 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7.“투자보조금”이란 승강기산업체를 뱌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고용보조금”이란 승강기산업체를 뱌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승강기산업체를 뱌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뱌리조성과 승강기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뱌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거창승강기산업밸리추진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밸리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승강기산업체의 효율적인 유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승강기산업밸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밸리조성사업의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밸리조성사업의 국·도비 예산확보 등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제반활동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승강기산업구조 고도화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산·학·연·관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밸리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거창군 소속 공무원과 지역국회의원, 경상남도의회의원, 거창군의회의원, 밸리조성사업과 관련된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 승강기 산업 관련 업계·학계·연구계의 전문가, 그 밖에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 민원 등을 일으키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승강기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운영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

제1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뱌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 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뱌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뱌리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방세 감면) 승강기산업체의 이전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및 「거창군세 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공유재산 지원) 승강기산업체가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적 지원)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승강기산업체의 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관리관을 지정하되, 전담관리관은 승강기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제1항의 전담관리관은 유치 승강기산업체의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불편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 승강기 산업체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 인원규모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포상) 군수는 빨리조성사업이나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획·발명·연구·개발·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국내·외 승강기산업체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투자유치 촉진에 관하여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하여는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